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148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2977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14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단2782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경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규선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단278222 판결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선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9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만 판사 김익환 판사 임수희